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금융감독원
	보도	2018. 12. 13.(목) 조간	배포	2018. 12. 12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담 당 자	금융위 보험과 권기순 사무관(02-2100-2963)
	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 종 수(02-3145-7240)		금감원 보험리스크총괄팀장 박진해 부국장(02-3145-7242)

제 목 :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와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◈ 그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제도(RBC)와 별도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, 자본력 수준을 관리하는 절차를 운영해 옴

ㅇ 글로벌 기준 등을 참고하여 '17년에 체계화된 제도(이하 ORSA*)를 도입하였으며, 금번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

*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

◈ 보험회사의 ORSA제도 실시는 IMF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FSAP* 평가항목 중 하나로, '19년 예정되어 있는 동 평가에도 대비할 필요

*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: IMF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진단하고,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('99.5월)

1. 추진 배경

□ 보험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존과 다른 다양한 리스크가 출현함에 따라, 보험업법규에서 제시하는 감독기준 이외에 보험회사가 자체 실정에 맞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

* 미국,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'15년부터 ORSA제도 시행(참고3)

○ 그간,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충분한 부채(책임준비금) 및 추가자본(지급여력)이 적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왔고 보험회사도 지속 노력

○ 다만, 보험회사별로 보험상품, 자산운용 전략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전략에의 활용도 미흡하다는 지적

□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**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**의 일환('14.7월)으로, **'17년부터 "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"**(ORSA)를 도입

○ ORSA는 리스크의 **양적 평가·관리체계**인 **지급여력제도**(RBC)의 **한계를 극복**하기 위해, **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**하기 위한 제도(참고1)

◇ 계량리스크 중심의 지급여력제도와 달리 **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①비계량리스크**(법률·평판 등)**까지 포괄하여 중요리스크를 선정**

◇ **②자체 모형으로 위험을 측정**, **③경영계획 및 위기상황까지 반영**하여 **회사의 자본력을 평가**, 그 결과를 **경영정책에 반영**하는 것이 핵심

※ (예시) 그간 질병·건강보험 상품개발시 영업경쟁만을 고려하였다면, 앞으로는
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·분쟁시 비용유발 항목 등 중요리스크 요인도 고려,
② 책임준비금·지급여력 산출시 회사의 경험치(자체 모형)를 보다 충실히 반영,
③ 의료환경 및 경제상황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상품 설계

□ 보험회사는 '17년 제도 시행에 따라 **ORSA체계를 마련**하였거나 또는 시행을 **준비*중**이나, **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**(참고2)

* 현행 제도는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측정모형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 제도시행을 유예 가능

☞ **ORSA가 조기에 정착**하여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**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**

[참고 : ORSA와 지급여력제도 비교 현황]

		ORSA제도	지급여력제도(RBC)[2]
리스크 통제		이사회, 경영진의 책임	
⇩			
리스크 평가	**측정모형**	보험회사 자체모형	RBC 표준모형
	중요 리스크	계량 및 비계량(법률·평판 등)을 포괄하여 회사가 자체 선정	계량리스크 중심
⇩			
지급여력 평가 (자본적정성)		지급여력금액 / 필요자본[1]	지급여력금액 / RBC 요구자본[1]
⇩			
평가결과 보고		회사 이사회 보고(승인)	감독당국 보고

주1) RBC는 법규에 근거, ORSA는 경험치 등을 활용한 자체 모형으로 리스크 산출
주2) 지급여력제도(RBC)는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전면 개정시 신지급여력제도(K-ICS)로 대체

2. 주요 내용

1 보험회사의 ORSA 운영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('19.2분기)

○ **ORSA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**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, 평가결과의 활용 등 **ORSA 운영수준을 평가**하고, 도입을 **준비중인 회사**는 **준비상황**을 **주기적으로 점검**할 계획

○ 보험회사가 **ORSA 운영수준**을 **개선**하고, **향후 도입에 참고**하도록 **평가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표**

○ **금년중**에 **평가지침**을 **마련**하고, **'19년부터** 전년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**매년 시행**

< 공표 내용(예시) >

구 분	내 용
시행회사	▪ 제도를 운영중인 회사명 ▪ 우수사례 선정회사와 주요 평가내용 ▪ ORSA 운영수준 평가결과가 '양호'한 회사명 ▪ 각 평가수준별(양호, 보통, 미흡) 회사 분포
유예회사	▪ 회사별 제도 시행예정시기 ▪ 제도 도입준비상황이 '양호'한 회사명

2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ORSA 운영실적 반영('19년)

○ 자체 지급여력 산출 및 평가 역량 등 **ORSA 운영경험**이 **충분히 축적**되었는지 여부를 금감원의 **내부모형 승인** 심사에 반영할 계획

3 보험회사별 운영실태 평가결과 피드백('19년~)

○ 매년 ORSA를 **최초로 시행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평가**(문제점 지적 보다는 컨설팅)하고, 그 결과 및 개선필요 사안을 **경영실태평가에 반영**하고, **해당 보험회사에 개별 제공**

3. 기대 효과

□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에 기여

○ 평가결과 외부공표와 회사별 피드백을 통해 **보험회사**가 **ORSA제도 운영**을 보다 **내실화**하고 **위험관리역량**을 **강화**할 것으로 기대

□ 지급여력제도의 내부모형 도입에 기여

○ '내부모형 승인기준'에 ORSA 운영경험 등 질적 평가항목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**ORSA제도 운영의 활성화**는 **내부모형 도입**에도 **도움**

□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

○ 향후 **IMF의 FSAP 평가시,**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**규제체계**를 **지속 개선***하고 있다는 **인식을 제공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* 지난 2013년 IMF는 우리나라 보험부문에 대한 FSAP평가에서 ORSA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

참고1 「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」(ORSA) 개요

□ **(정의)** 보험회사가 스스로 **회사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측정모형**을 **구축**하고, 현재 뿐만 아니라 **장래의 경영계획까지 반영한 리스크**를 산출함으로써 **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**하고,

○ 현재의 **리스크통제수준**이 장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**자체적으로 평가**하는 **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**를 의미

□ **(운영)** 보험회사는 **연 1회 이상** ORSA체제에 의해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, 그 **결과를 이사회에 보고**하며,

○ **이사회**는 회사의 위험성향, 경영환경 및 자체 지급여력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경영계획을 승인하는 등 **리스크중심 경영의 최종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**

□ **(평가내용)** ① 이사회 등의 **리스크통제구조**, ② **중요 리스크**의 인식과 평가, ③ 가용자본 및 리스크량을 이용한 **자체 지급여력 평가**, ④ **평가결과의 활용** 등으로 구성

○ **(리스크 통제구조)** 전사적 관점에서 **이사회·최고경영진** 등의 리스크 통제구조가 적정한지 여부

○ **(중요 리스크)** 계량화할 수 있는 리스크(보험·금리 등) 외에 **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리스크(법률·평판 등)를 포괄**하여 중요 리스크를 적정하기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

○ **(회사별 특성 고려)** 회사의 위험선호, 보험 및 투자 포트폴리오 등 **회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필요자본량**을 산출하고 있는지 여부

○ **(미래 지급여력 평가)** **미래의 위기상황**을 가정하여 **리스크와 지급여력 수준을 평가**하고 있는지 여부

□ **(도입효과)** 표준화된 방식의 양적 자본규제인 **RBC제도로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다양한 위험을 제대로 인식·평가하는데 한계**가 있어 이를 **보완**하고, **리스크통제를 강화**하여 **리스크중심의 경영으로 전환 유도**

참고2 보험회사 ORSA 제도 운영현황

□ 53개* 보험회사 중 11개사가 '17년에 도입한 반면, **42개사**는 '18년 이후로 **도입을 유예**하여 **현재 제도 도입비율**은 **약 20% 수준**

* '18.6월말 현재 전체 55개 보험회사 중 철수 예정인 2개사 제외

< ORSA제도 시행(예정) 시기별 현황 >

('18.6월말 현재)

구 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미확정	계
생보사	4개사	-	5개사	1개사	12개사	2개사	24개사
손보사	7개사	3개사	3개사	1개사	2개사	13개사	29개사
도입비율 (누적)	20.8%	26.4%	41.5%	45.3%%	71.7%	100.0%	

1 도입시기 유예회사(42개)

□ **14개사**는 **'21년까지 비교적 장기간 제도 시행시기를 유예**하였고, **15개사**는 '21년에 시행여부를 재검토하거나 매년 유예시기를 검토할 계획으로 **향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**

○ 또한, **13개사**는 향후 ORSA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**준비계획***을 **확정하지 못해 시행일정을 연기**되거나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하더라도 **제도 운영이 충실하지 못할 우려**

* 리스크평가방법 검토, 리스크 내부통제구조 정비, 자체 리스크측정모형 구축 등

2 도입 시행회사(11개)

□ **회사간 ORSA 운영수준의 차이가 큰 상황**으로, **5개사**는 아직 **ORSA 체제의 핵심사항* 운영에서 개선**이 **필요**한 것으로 평가

* 장래 경영계획을 반영한 재무건전성 영향 분석, 비계량위험을 포함한 중요리스크 평가, 자체 모형을 활용한 리스크평가, ORSA 평가결과의 경영의사결정 활용

참고3 ORSA제도 관련 해외 및 은행권 도입현황

1 해외 주요국의 ORSA제도 운영현황

□ (EU) '09년 유럽의회가 승인한 「Solvency Ⅱ 지침」에 리스크관리체제의 일환으로 ORSA제도를 반영하여 **'16.1월**부터 시행

□ (미국) '12년 NAIC는 리스크중심 감독체제의 강화를 위해 「리스크 관리 및 ORSA에 관한 모델법」을 제정하여 **'15.1월**부터 시행

□ (호주) ORSA 체계의 **ICAAP*** 제도를 **'13.1월**부터 시행

*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(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)

2 국내 은행권 운영현황

□ **'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'**를 **'08년**부터 시행하고 있으며, **은행 운영실태의 적정성을 평가**하기 위한 **점검기준**을 마련(시행세칙)

○ 내부 **자본적정성 평가체제 운영원칙***을 정하고, 이를 은행 **내부 자본적정성 관리**에 **반영**하도록 규정

* ①이사회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, ②내부자본적정성 관리, ③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, ④모니터링 및 보고, ⑤통제구조 등에 대한 평가원칙

○ 또한, **은행의 자체평가 적정성을 감독당국**이 **점검**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감독조치(추가자본 적립요구)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